2010. 9. 14. (화) 10:00
제16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0. 6. 30.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0. 7. 1.

○ 상정일자: 2010. 9. 13.(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안번호 :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2009 ~33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09 ~34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이월액)
계	**472,050**	**446,300**	**391,933**	**74,367**
일반회계	407,286	400,975	346,581	54,394
특별회계	64,764	65,325	45,352	19,973

○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 수납액은 466,300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391,933백만원으로
- 차인잔액(이월액)은 74,367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중에는
- 명 시 이 월 : 19,994백만원
- 사 고 이 월 : 15,618백만원
- 계속비 이월 : 21,540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2,28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934백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오납수납액	미수납액
계	**440,038**	**438,981**	**434,193**	**229**	**4,788**
일반회계	407,286	404,850	400,975	216	3,875
특별회계	32,752	34,131	33,218	13	913

※ 공기업 제외

○ 2009년도 실제수납액은 434,193,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38,981백만원 대비 98.9%이며, 미수납액은 4,78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임

3)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350,540**	**440,038**	**366,929**	**51,509**	**21,600**
일반회계	318,248	407,286	346,581	49,986	10,719
특별회계	32,292	32,752	20,348	1,523	10,881

○ 2009년도 총 지출액은 366,929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40,038백만원의 83.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50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7%이며 집행잔액 21,600백만원은 예산현액의 4.9%임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 이 용(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이용금액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건				**15,460,981**	**1,000,000**	**1,000,00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수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5,377,665	**1,000,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상수도정비	401-01 시설비	10,083,316		**1,000,000**	

□ 전 용(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6 건				**16,483,1569**	**987,616**	**987,616**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군정시책개발	306-01 출연금	150,000	20,000		기초생활권발전계획조사
		군정시책개발	201-01 사무관리비	2,610		20,000	
행정과	일반행정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89	1,189		인건비전용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68		1,189	
행정과	일반행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202-01 국내여비	480	480		인건비전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92		480	

문 화 관광과	체육	체육행사및활동지원	201-03 행사운영비	75,000	70,000		거창스포츠파크준공기념행사
		체육행사및활동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668,600		70,000	
문 화 관광과	문화재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60	3,577		집행방침변경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577	
1010추진단	무역및투자유치	승강기 산업 추진	502-01 출자금	100,000	100,000		학교법인설립기본재산출연금전용
		승강기 산업 추진	306-01 출연금	1,500,000		100,000	
1010 추진단	무역및투자유치	승강기 산업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25,000	10,000		승강기조성사업의국제적행사
		승강기 산업 추진	307-04 민간행사보조			10,000	
1010 추진단	일반행정	인구증가시책 추진	301-01 행사실비보상금	13,760	13,760		출향인의날행사운영에적합한과목으로변
		인구증가시책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3,760	
경제과	노동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206-01 재료비	383,411	5,400		인건비부족액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5,632		5,400	
경제과	노동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206-01 재료비	385,311	1,900		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303-01 포상금			1,900	
경제과	노동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89,216	73,584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206-01 재료비	311,727		73,584	
경제과	노동	일자리창출사업(자체)	401-01 시설비	240,000	23,000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일자리창출사업(자체)	301-12 기타보상금			23,000	
산림환경과	폐기물	폐기물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2,381	6,000		청소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폐기물관리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900		인력관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4,356		900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6,193	8,000		인력관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6,356		8,000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1,880	1,179		인력관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5,177		1,179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201-02 공공운영비	20,753	15,753		인력관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9,424		15,753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6,054	9,000		인력관리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1,925		9,000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8,520	606		인력관리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1,319		606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201-02 공공운영비	61,253	22,000		인력부족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9,319		22,000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산촌생태마을 조성	401-01 시설비	596,220	21,000		홈페이지구축
		산촌생태마을 조성	207-02 전산개발비			21,000	
산림환경과	임업·산촌	산림병해충 대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200	6,200		원활한업무추진
		산림병해충 대책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420		6,200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폐비닐수거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9,000	9,000		폐비닐수거지원
		폐비닐수거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9,000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채종단지운영지원	206-01 재료비	910,000	559,838		사업목적이변

		채종단지운영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28,600		559,838	경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농업교육지원	301-01 행사실비보상금	9,450	2,250		재해보상비
		고품질쌀생산 지원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2,250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301-10 행사실비보상금	7,800	3,000		농촌체험가이드발간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201-01 사무관리비	69,200		3,000	

【검토의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대원칙이 있으므로 예산을 전용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통보(보고)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됨.

□ 이 체(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2건				**677,000**	**677,000**	**677,000**	
경제과	산업금융지원	기반시설조성(09년삭제)	401-01 시설비	100,000	100,000		(명시이월예산)업무이관
1010추진단		기반시설조성(09년삭제)	401-01 시설비			100,000	

경제과	산업금융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10,000		업무이관
1010추진단		창업보육센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경제과	산업금융지원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10,000		업무이관
1010추진단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경제과	산업금융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2,000	42,000		업무이관
1010추진단		고용보조금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2,000	
경제과	산업금융지원	근로자자녀장학금지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15,000	15,000		업무이관
1010추진단		근로자자녀장학금지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15,000	
경제과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적립	702-01 기금전출금	500,000	500,000		업무이관
1010추진단		중소기업육성 기금적립	702-01 기금전출금			500,000	

□ 이 체 (특별회계) : 해당없음

【검토의견】

○ 예산의 이체(移替)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예산 이체사항은 경제과 및 1010추진단의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항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서 의회심의 대상은 아님.

5) 계속비 결산

(단위:천원)

재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 년 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7,254,669**	**19,122,274**	**36,355,274**	**18,481,973**	**17,862,720**	**10,580**
국고보조	거창문화원 건립	1,083,000	4,565,324	5,648,324	1,126,246	4,522,078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959,000		959,000	4,232	954,768	
국고보조	거창군민체육센터 건립	3,150,000	2,350,000	5,500,000	1,445,344	4,054,656	
국고보조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6,142,000	2,437,344	8,579,344	8,571,651		7,693
국고보조	소도읍 육성	3,756,480	7,842,219	11,598,699	6,287,976	5,310,552	170
국고보조	거창사과테마파크조성	2,142,520	1,927,387	4,069,907	1,046,524	3,020,666	2,717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거창문화원 건립사업과 거창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각 80.1%, 73.7%로서 그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6)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명시이월	**계**	**78**	**66,235**	**19,078**	
	일반회계	75	62,272	17,554	
	특별회계	3	3,963	1,524	
사고이월	**계**	**65**	**80,181**	**14,569**	
	일반회계	65	80,181	14,569	
	특별회계	-	-	-	

【검토의견】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2009년도 예산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78건 19,078백만원 사고이월이 65건 14,569백만원으로서 시기미도래, 공기부족,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되었음.

○ 이는 전년도 대비(명시이월 41건 7,751백만원, 사고이월 17건 3,007백만원)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예비비 결산

(단위:천원)

세부	지출사유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17 건**	**5,109,985**	**5,006,781**	**5,006,781**	**-**	**103,204**
소송 관리	배상금	16,000	16,000	16,000		
승강기 산업 추진	출연금 지원	2,000,000	2,000,000	2,000,000		
진료서비스 지원	신종인플루엔자 비상근무자	1,470	1,463	1,463		7
전염병 예방관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11,304	8,541	8,541		2,762
전염병 예방관리	신종인플루추정검사 장비	6,640	6,095	6,095		545
전염병 예방관리	신종인플루 예방	18,016	18,016	18,016		
전염병 예방관리	신종인플루 예방	45,004	44,958	44,958		46
전염병 예방관리	신종인플루추정검사 장비	16,142	15,785	15,785		357
전염병 예방관리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20,757				20,757
전염병 예방관리	신종인플루추정검사	20,600	20,555	20,555		45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희망근로 인건비	265,000	264,498	264,498		502
농촌현장 인턴 운영	농촌현장 인턴	19,336	19,336	19,336		
고품질 쌀생산 지원	우박피해농가재해지원	37,650	37,650	37,650		
과수품질향상	우박피해농가지원	100,000	28,950	28,950		71,050
마을상수도 정비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 국비지원	2,507,994	2,507,994	2,507,994		
마을상수도 정비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 국비지원	10,072	10,072	10,072		
행정인턴사업	행정인턴운영	14,000	6,867	6,867		7,13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일반회계의 1/100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지출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323백만원으로서 소송관련 배상금, 승강기산업 출연금, 전염병관리 비용으로 2,131,413천원을 집행하였음.

○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0,757천원은 집행결정 이후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불용액임

○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940백만원으로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6개사업에 2,868백만원은 지출하고, **우박피해 농가지원사업비 100백만원중 29백만원만 지출하고 71백만원을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8) 기금결산

(단위: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잔액 (A)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잔액 (D=A+B-C)
		수납액 (B)	지출액 (c)	
합 계(10건)	**4,824,088**	**1,646,371**	**647,694**	**5,822,765**
아림예술제진흥기금	460,121	63,512	23,200	500,433
체육진흥기금	35,522	14,814		50,336
식품진흥기금	29,180	26,501	38,371	17,309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70,417	66,113	20,400	516,131
노인복지기금	1,017,970	48,540	39,090	1,027,421
여성발전기금	841,894	182,842	11,150	1,013,586
기초생활보장기금	201,476	109,884		311,360
생활안정기금	111,616	44,527	10,000	146,142
재난관리기금	841,917	549,708	505,483	886,142
중소기업육성기금	813,975	539,930		1,353,905

【검토의견】

○ 2009년도 현재 거창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전연도말 현재액은 4,824,088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646,371천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647,694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822,765천원임.

○ 지출액이 전혀 없는 3개기금(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목표액 도달까지 기금 조성단계에 있는 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9) 채권액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발생액	당해년도 소멸액	당해년도말 잔액
합 계		**4,613,466**	**1,622,411**	**1,535,947**	**4,699,930**
일반회계		3,782,870	187,148	0	3,970,018
특별회계	소 계	471,763	1,255,919	1,241,939	485,743
	농업발전기금	107,733	9,682	6,875	110,540
	산업단지 조성사업	364,030	1,246,237	1,235,064	375,203
기 금		358,833	179,344	294,008	244,169

【검토의견】

○ 2009년도 현재 우리 군의 채권액은 4,699,930천원으로서 이행기간 미도래액 4,453,336천원이며, 이행기간 도래액 246,594천원임. 이중 이행기간 도래액 246,594천원은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10) 채무액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발생액	당해년도 소멸액	당해년도말 잔액
합 계		**12,977,200**	**3,700,000**	**2,418,200**	**14,259,000**
일반회계		8,900,000		2,100,000	6,800,00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4,077,200	3,700,000	318,200	7,459,000
	상수도사업	3,950,800	3,700,000	302,400	7,348,400
	하수도사업	126,400		15,800	110,600

【검토의견】

○ **2008**년도 말 우리 군에서 갚아야할 채무액은 12,977,200천원에서 2009년도에 3,700,000천원이 발생하고, 2,418,2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200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14,259,000천원임

11) 보조금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94,394,893**	**194,433,023**	**163,910,980**	**27,474,140**	**3,044,903**
일반회계		179,597,502	179,635,632	149,934,987	26,694,567	3,006,078
특별회계	소 계	14,797,391	14,797,391	13,975,993	779,573	38,825
	의료보호기금	196,930	196,930	193,930	0	0
	수질개선	14,600,461	14,600,461	13,782,063	779,573	38,825

※ 별도 검토의견 없음.

3.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가. 총 평

⇒ 2009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 세입 : 466,300,002천원

○ 세출 : 391,932,827천원

○ 이월액(잔액) : 74,367,175천원으로서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19,993,959천원, 사고이월 15,618,125천원, 계속비 이월 21,539,50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81,65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933,928천원임.

○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방향을 보면 합리적 재원 배분과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고유가 시대와 미래사회 준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 재정운용,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예산현액의 16.9%인 74,367,175천원이 이월되어 21,599,69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므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 통제기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정과 성과 평가가 가능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이 대폭 향상 되었으며 재무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종전보다 나아졌는지 여부와 단체장과 공무원이 전문경영인의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세입면에서 보면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5,485,611원, 지방세 부담액은 292,606원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나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등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

방세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지역부존자원 개발과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로 지역 세입기반 확충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됨.

○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 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건전성, 계획성, 윤리성,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각종 사업면에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 하였으나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고 투자 심사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경비의 집행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하였으나 각부서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시성, 선심성 소모성경비, 불요불급 경비의 억제와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 보조금은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보조사업은 특정사업의 진흥이나 장려, 행정목적 수행 등 공익적 지출을 극대화 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특혜시비와 형평성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가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은 10종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하며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은행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

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채권액인 융자사업은 융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군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회수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나. 2009년 군정 성과

○ 2009년도에는 우리 거창이 지향하는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인구 거창건설을 위한 비전으로 군민중심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소외계층 복지 증진,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7대 역점시책과 32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한 결과 수상실적 29개 분야 인센티브 6억원, 공모사업 선정 19분야 사업비 283억8천만원을 획득하는 등 보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책별 추진 성과는 아래와 같음.

○ 시책별 추진 성과는 승강기 산업 벨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산업단지 조성으로 거창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복지 서비스 제공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빙 거창의 녹색도시 조성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 조성

다. 미흡한 사항

○ 2009년도 군정 운영은 민간의 자율 창의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탄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적극 지원, 교육 기회 확대,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중점 지원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음.

○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음

- 당초예산 편성후 그대로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에 대하여는 2009년 추경때 삭감을 하여 결산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예비비 결산중 승강기산업 추진 출연금지원으로 2,000,000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지출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시 의회 사전 보고 등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계속비 결산중 거창문화원 건립에 있어 2009년도에 1,126,246천원을 지출하고 4,522,078천원을 이월하였는데 문화원사는 2010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병목현상이 생기도 않도록 각유념하기 바람.

- 세입결산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체납사유가 고질적 체납으로 59,930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으로 2008년 3월 28일 법령이 폐지되었으며 체납액은 2006년, 2007년도분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체납처분절차의 미숙 등으로 현재까지 미 수납된 체납금으로 차후 정확한 체납처분절차 이행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9. 5. 26 ~ 6. 14(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과, 사업의 조기추진 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 할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 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